

첨부

「코로나19 사태」 대응을 위한
불법사금융 근절방안

2020. 6.

관계기관합동

순서

I. 추진배경 및 전략	1
II. 즉시 추진조치	3
III. 제도개선	7
IV. 추진일정	9

I. 추진배경 및 전략

1 추진배경

- 불법사금융 범죄가 다양한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면서 취약 계층* 중심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악의적·지속적으로 침해

* 최근 불법사금융 실태조사에 따르면, 고령층·주부·청소년 피해자가 늘어나는 추세

불법사금융 신종수법 사례

- ▶ (내구제대출)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할인매입하여 대포폰으로 유통하고 요금은 전가
- ▶ (상품권깡) 상품권 소액결제를 유도한 후 상품권코드를 온라인 할인매입
- ▶ (대리입금) 청소년 대상 게임머니·콘서트티켓 구매대행 이후 불법금리를 붙여 회수
- ▶ (30-50대출) 30만원을 대출하여 1주일 뒤 50만원 회수 → 반복 → 거액대출 유도

- 그러나, 신종수법의 규제근거가 법률·부처별로 분산*되어 있고, 피해구제도 기관별로 분절** 제공되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

* "내구제대출"(전기통신법), "상품권깡"(정통방법), "대리입금"(대부업법) 등

** 피해상담(금감원), 법률구제(법구공), 대체자금지원(서금원), 복지급여(지자체) 등

- 특히,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정부·공적지원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시도가 증가

* (정부·금융권 사칭) '코로나19 통합대환대출', '서민금융원', 'KB국민지원센터' 등 정책금융상품이나 공적기관·금융기관으로 오인되도록 광고

-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·제보*는 '19년대비 '20.4~5월 중 약 60% 증가

* 일평균 건수: ('19년) 20 → ('20.1월) 25 → (2월) 25 → (3월) 29 → (4월) 35 → (5월) 33

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척결의지를 표명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

2 추진전략

□ 6.29일부터 연말까지를 범정부 차원의 “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”(20.6~12월)으로 선포하고

① 범정부 T/F를 구성, 정부역량을 총결집한 “하나의 조직처럼” 긴밀히 협업·대응하여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의 실질적 성과 도출



② 「예방·차단 - 단속·처벌 - 피해구제 - 경각심제고」 순 단계에 걸쳐 **즉각적인 조치**와 **제도개선**을 속도감있게 병행 추진

[단계별 주요 대응조치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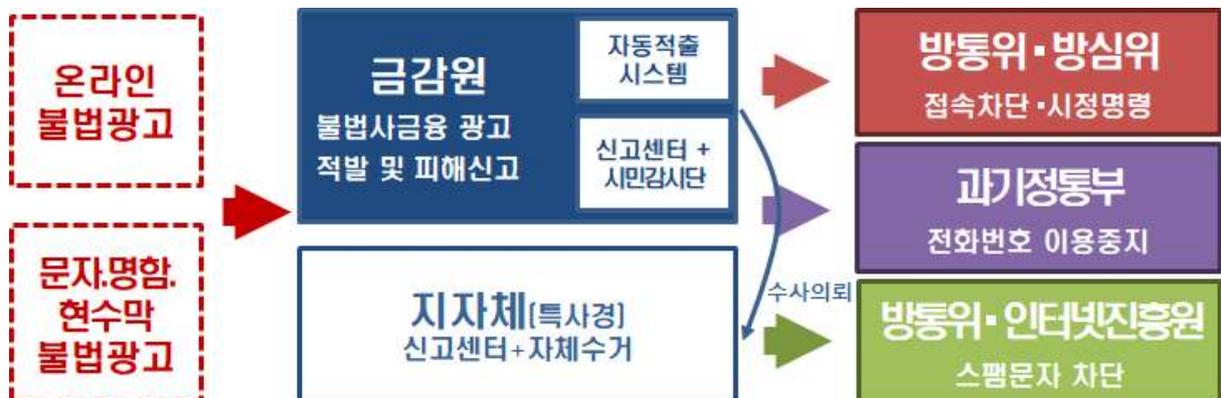
	1 단계 즉시 추진조치	2 단계 제도개선(20년중)
1. 예방 차단	<input type="checkbox"/> 불법광고 적발 강화 <input type="checkbox"/> 불법광고 신속차단(Fast-Track)	<input type="checkbox"/> 온라인매체의 불법사금융광고 유통방지 노력의무 신설 <input type="checkbox"/> 온라인 편법대부 규율근거 보강 <input type="checkbox"/> 광고적발·차단기관 간 연계강화
2. 단속 처벌	<input type="checkbox"/> 검·경·특사경 일제단속 <input type="checkbox"/> 지자체·금감원 집중점검·검사 <input type="checkbox"/> 국세청 탈세업자 세무조사 등	<input type="checkbox"/> 처벌강화 (법정형 상향)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적지원 사칭광고 금지근거 보강
3. 피해 구제	<input type="checkbox"/> 범정부 구제프로그램 연계 (상담·소송지원·대체자금·복지 등)	<input type="checkbox"/> 불법사채 이자수취 제한 <input type="checkbox"/> 연체원리금 증액재대출 및 무자료대출계약 무효화
4. 경각심 제고	<input type="checkbox"/> SNS·대중교통 등 집중홍보	

II. 즉시 추진조치

1 불법영업시도 차단

예방·차단 → 단속·처벌 → 피해구제 → 경각심 제고

- **[차단대상]** SNS·인터넷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대부 광고와 문자·명함·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
- **[추진기관]** 금감원, 과기정통부, 방통위, 방심위
- **[추진방식]** 신종수법·불법시도에 대한 신속경보체계 운영
 - ① 금감원 내 전담팀 설치(한시조직) 및 자체적출·외부제보를 통해 신종영업수법까지 적발해 유관기관*에 차단 요청
 - * [온라인광고] 방심위(접속차단) ▪ [오프라인광고] 과기정통부(전화번호 이용중지)
 - [스팸문자] 인터넷진흥원(스팸발신 차단)
 - 신종수법 출현·피해증가 우려시 소비자경보 발령 및 경고문자 발송
 - ② 적발된 불법 광고·통신수단은 방통위·과기정통부 등의 긴급차단절차(Fast-track)를 적용하여 빠르게 지속적으로 차단*
 - * [신속차단] ▪ 온라인광고(앱·웹사이트): 2주 내외(중전 2개월) ▪ 전화번호: 3일 내외
 - [지속차단] ▪ 차단지속기간 연장: 1년반(중전 1년) ▪ 통신사 변경시에도 차단 유지
- 상습배포지역 중심으로 불법대부광고 전단지 등을 집중수거하여 미스터리쇼핑 등 단속·수사에 활용하고 노출도 차단



2 범부처 일제단속



- **[단속대상]** 신종영업수법을 포함한 온·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, 금감원의 피해신고·제보건, 수사기관의 자체인지 범죄정보 등
- **[추진기관]** 경찰, 법무부·검찰, 지자체(특사경), 국세청, 금감원
- **[추진방식]** 6월말부터 연말까지 단속유관기관*이 일제히 집중단속

- * ■ (경찰) 지능범죄수사대(688명)·광역수사대(624명) 등 투입
 ■ (지자체) 대부업 특사경 전원 투입 ■ (금감원) 불법금융 단속전담팀 운영

- ① 단속기관간 신고·분석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*하여 취약계층 대상 신종범죄수법 및 불법추심을 중점적으로 단속**

* 단속유관기관 간 핫라인을 운영하고, 범정부 TF 회의시마다 수시협의

** 수거한 불법대부광고 전단지 등을 통해 미스터리쇼핑 수사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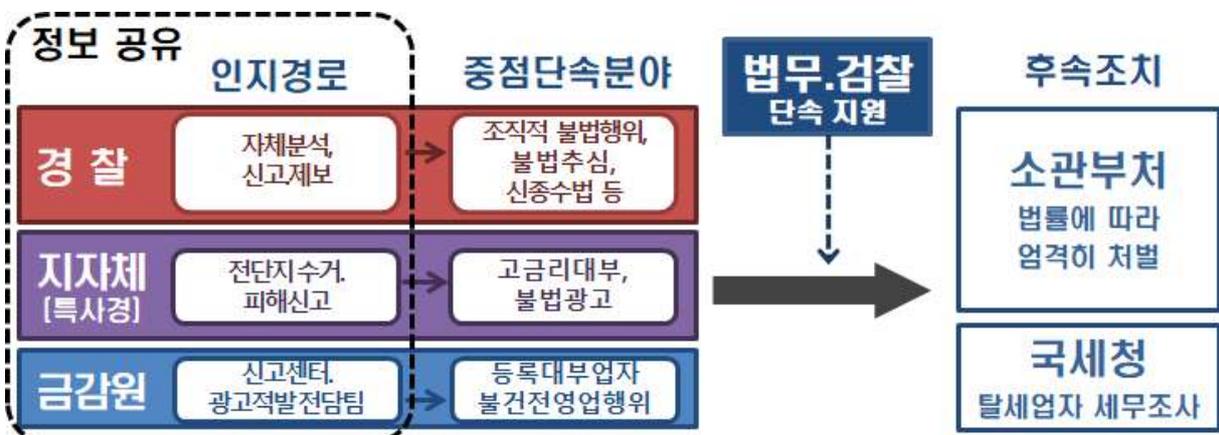
- 다수의 대출브로커, 배후 전주 등이 관여한 조직적 불법행위를 적극 인지수사하고, 민원·수사의뢰건 외 모든 불법행위 철저 수사

* 조직적 불법대부업 행위는 범죄단체조직죄, 악질적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폭력행위처벌법까지 의율, 구속영장 적극 신청 검토

- ② 적발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조항*을 엄격히 적용하여 처벌

* 대부업법, 형법, 공정추심법, 폭력행위처벌법, 표시광고법, 전자금융거래법, 여신전문금융업법, 전기통신사업법, 정통망법, 조세범처벌법 등

- 불법사금융 불법이득은 필요시 적극 몰수보전 신청하고, 탈세업자 세무조사 추진을 통해 탈세이득 박탈



3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



- **[구제대상]** 고금리·불법추심 피해자
- **[추진기관]** 금감원(신고접수·상담), 법률구조공단(법률구제), 서민금융진흥원(대체자금 지원), 복지부·고용부·지자체 등(복지·자활지원)
- **[추진방식]**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자활지원을 위해 금융·법률·복지·고용 등 쏠 분야에 대한 피해자 맞춤형 연계지원
 - ① 금감원이 피해자 1차 신고접수·상담기능을 총괄, 법률구제·자금지원 등 필요서비스를 파악하여 법구공·서금원에 즉각 연계
 - 이를 위해 '온라인 구제신청시스템'을 개설하고, 지자체·서금원과 함께 전통시장·주민센터 중심으로 '찾아가는 피해상담소' 운영
 - ② 법구공은 불법추심·고금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맞춤형 법률상담 및 채무자대리인·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
 - ③ 서금원은 직접 접수·인계된 피해자의 자금수요 해소를 위한 종합상담 후 대출공급, 채무조정, 복지·고용지원 맞춤형 연계
 -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상품 종합안내플랫폼("서민금융 한눈에")을 본격운영하고, 관계기관(지자체, 고용복지센터 등)과 전산망 공유



4 대국민 경각심 제고



□ **[홍보내용]** 신종 불법사금융의 주요 수법·폐해, 신고·구제방법, 범정부 차원의 서민금융 지원상품 종합홍보

□ **[추진기관]** 금융위, 금감원, 지자체, 서금원, 범구공, 대부협회 등

□ **[추진방식]** 대국민 접점이 많은 SNS·포털 등 온라인매체*와 지하철·버스 등 대중교통(스크린도어·외벽·차내)을 적극 활용

* 관련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전용 유튜브채널 개설·운영

○ 공공요금 고지서 등에 서민금융 지원상품 소개 및 신청 방법·신청페이지링크 등 안내

* 전기요금, 대출원리금 납입통지서·연체안내문, 대학등록금 등

○ 소상공인·청년층·주부·고령층 등 취약그룹별 맞춤형 홍보 강화

* ■ (청년층) 학교방문교육 ■ (주부) 대형마트·백화점 문화센터
■ (고령층) 복지관·경로당 행사·교육 등

- 특히,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·서민들의 방문수요가 높은 상담창구* 중심으로 홍보유인물 배포

* ■ 고용복지플러스센터(실업급여) 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(서민금융상품 이용),
■ 은행 등 금융권·소상공인지원센터(코로나19 소상공인 특별대출) ■ 상가상인회

홍보내용	홍보방법	실행기관
① 신종수법·폐해 ② 피해신고·구제방법 ③ 서민금융 지원상품	전용 유튜브 채널	금감.서금
	공공요금 고지서	협회.한전교육부
	소비자정보·경고문자	금감.과기
	대중교통 전광판	금감.서금.범구
	금융·실업급여 상담창구	협회.고용.중기
	타겟별 홍보·교육 (학교방문, 문화센터, 경로당행사등)	금감.서금.협회

III. 제도개선

1 제도적 보완

- **[노출차단]** 온라인매체(SNS·인터넷포털)에 불법광고 유통방지노력 의무를 부과하고, 온라인게시판 형태의 편법중개 규율기반 강화

현행 문제점

- ① 온라인매체가 대가를 받고 대출광고 게재시에도 광고주에 대한 최소한의 불법성 확인의무가 부재
- ② 온라인게시판을 운영하면서 대부를 중개함에도 중개수수료가 아닌 **게시판 사용료(회원가입비)**를 받는 경우에는 **법적 규제근거가 모호**

- **[불법이득 제한]**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를 제한*하고,

* (예) (현재) 24%까지 수취가능 → (개선) 상사법정이자율(6%)까지만 인정

- 연체이자 증액재(再)대출*·무(無)자료 대출계약**에 대한 효력을 불인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근거 강화

* (예) 100만원을 20%로 빌려 갚지 못한 경우 연체이자 포함 120만원 재대출시 (현행) 120만원 모두 이자율 인정 → (개선) 최초 원금 100만원에만 이자율 인정

** (현행) 구두나 계약서 없이 계약체결해도 대출효력 인정 → (개선) 대출약정 무효

현행 문제점

- ① 불법사금융업자가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로 불법대출을 하더라도 **최고 금리 수준까지는 유효하게 수취가 가능하여 불법영업 유인이 지속**
- ② 소액대출에서 시작해, 연체시 **연체원리금을 증액하여 재대출**하는 방식으로 채무자를 장기포획하고, **최고금리(24%) 및 연체가산금리(3%p) 규제를 회피**
- ③ 대출조건이 기재된 **계약서 없이** 구두·모바일메신저로 **불법대출이 진행**되어도 **대출이 유효하게 성립**되고, 차주가 계약조건 등에 대한 사후적 대응이 곤란

- **[처벌강화]** 공적지원(정부,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)을 사칭하는 불법 대부광고 처벌근거를 보강하고, 불법사금융 법정형(벌금형)을 강화

현행 문제점

- ① 서민금융 “상품명” 도용시 대부업법상 처벌되고 있으나, 정부, 서민금융진흥원,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“제공주체”를 사칭할 경우에는 **처벌근거가 불명확**
- ② 불법사금융이 **민생침해 악성범죄**라는 점이 고려되지 않고 단순 무등록영업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**처벌수위가 불법사금융 근절에 미흡** (최고 3천~5천만원)

2 시스템적 보완

- **[광고차단]** 금감원(적발기관)과 방심위·인터넷진흥원(차단심의기관) 간 적발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산연계하여 온라인 불법광고 신속 차단

현행 문제점

- 기관간 적발자료 통보방식이 고도화되지 않아 실무자 안건작성·검토·채증절차를 포함, 불법광고 심사에 평균 66일('19년 기준)이 소요되어 **불법광고에 따른 피해가 장기간 지속**
 - 심의검토 과정 중 “치고빠지기식” 광고가 피해를 유발한 뒤 사라져 **제재 없이 심의·검토가 종결되는 경우 다수 발생**(각하건 28%, '19년 기준)
- 심사결과 통보도 평균 48일('19년 기준)이 소요되어 적발기관인 금감원이 **피해증지를 위한 차단 재요청을 검토할 시기도 지연**

- **[기술 개발]**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의 R&D 지원사업을 통해 빅데이터·AI를 활용한 ‘불법광고 적출’ 기술 개발유도

현행 문제점

- 민간 자율적으로 기술개발이 일어나려면 상업화가 가능해야 하나, 불법광고 적출과 같은 감독규제기술은 국가의 예산지원 없이는 자생적 개발에 한계

IV. 추진일정

- [즉시 추진조치] 6.29일부터 집중 추진하고,
범정부 T/F를 통해 수시 점검·보완

【 세부 추진과제 】

추진과제 · 방안	추진사항	추진주체
1. 불법영업 시도 차단		
① 온라인 불법광고 차단	· 불법광고 단속 전담팀 신설 · 불법광고 자동적출 시스템 운영 · 방심위 패스트트랙 적용	금감원, 특사경, 방심위 등
② 오프라인 불법광고 차단	· 신고센터 · 시민감시단 운영 등 · 과기정통부 패스트트랙 적용	금감원, 과기부 등
2. 범부처 일제단속		
① 피해신고·인지 채널 공유	· 금감원 집중신고채널(☎1332) 운영 · 신종영업수법 분석 · 공유 · 탐문조사 · 미스터리 쇼핑 등	금감원, 경찰, 특사경 등
② 일제 단속 등	· 경찰 지능범죄수사대 · 광수대 가동 · 특사경 전담팀 투입 등 · 국세청 탈세업자 세무조사 추진	경찰, 특사경, 금감원, 국세청 등
3.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		
① 피해신고 활성화	· 금감원 온라인신청 시스템, '찾아가는 피해상담소' 운영 · 구제절차 등 맞춤형 법률상담 제공	금감원, 지자체, 법구공 등
② 대체자금 등 맞춤형 연계	· 취약계층 금융지원상품 종합안내 모바일 플랫폼 운영 · 서금원-복지센터간 전산망 연계 · 서금원-지자체간 지역협의체 운영	서금원, 복지부, 지자체 등
4. 대국민 경각심 제고		
① 대국민 생활접점 홍보	· 전용 유튜브, 소비자경보 문자, 대중교통 및 금융창구 홍보 · 공공요금고지서, 등록금고지서 등에 경고 · 안내문구삽입	금감원, 교육부, 한전 등
② 취약계층 맞춤형 안내	· 학교교육, 상가 · 문화센터, 지역 소상공인 · 경로당 등 홍보	금융권, 서금원, 소진공 등

- **[제도개선]** 입법예고·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연내 가시적인 개선성과 도출

【 세부 추진과제 】

추진과제 · 방안	추진사항	추진주체	추진시기
1. 노출차단			
① 온라인매체 유통방지 노력의무 부과	자율규제 제정	금감원, 방통위 등	'20년 중
② 온라인 편법대부중개 규율 강화	대부업법 개정	금융위	'20년 중
③ 불법대부광고 신속차단	예산반영(금감원), 전산연계	금감원, 방심위	'20년 중 (전산연계'21.상)
④ 불법광고 적출기술 개발	예산반영	과기정통부 등	'20년 중
2. 처벌강화			
① 공적지원 사칭광고 금지	대부업법(령)·서민금융법 개정	금융위	'20년 중
② 법정형 강화	대부업법 개정	금융위	'20년 중
3. 불법이득 제한			
① 불법사채 이자수취 제한 등	대부업법 개정	금융위	'20년 중

① <내구제대출("나를 구제하는 대출")>

대학생 C씨(22세)는 등록금 낼 돈이 부족하던 차에 우연히 "휴대폰 개통시 즉시 100만원 지급"이라는 명함형 광고를 보고 연락하니, "최신휴대폰을 개통해서 유심칩과 함께 가져오면 현금을 주겠다"고 하여 그대로 실행

⇒ 연 50% 가까운 고금리대출과 동일하게 24개월간 휴대폰요금(월 8만원 → 총 192만원)을 납부하는 가운데, 국제전화요금도 매월 50만원 이상 청구, 이후, 제공한 휴대폰이 범죄에 사용되어 경찰의 조사까지 받게 됨

② <상품권깡>

주부 D씨(45세)는 급전이 필요해 돈 빌릴 곳을 찾던 중 "휴대폰소액결제로 모바일상품권(20만원)을 구입해서 온라인상으로 상품권코드를 보내주면 즉시 현금(17만원)을 입금하겠다"는 인터넷동호회카페 게시글을 보게 됨

⇒ 상품권구입액보다 훨씬 적은 현금을 받아, 연 수백%에 달하는 초고금리 이자를 부담하는 대출과 동일한 피해

③ <대리입금>

중학생 B씨(15세)는 좋아하는 아이돌 콘서트에 가고 싶으나, 당장 현금이 없어 고민하던 중 "티켓대금(10만원)을 대신 입금해줄테니 3일 뒤 수고비(1만원)와 함께 상환해달라"는 SNS 광고글을 보게 됨

⇒ 며칠만에 연 이자율 약 수백~수천%에 해당하는 초고금리 대출이자를 부담, 갚지 않을 경우, 사전에 준 주민증과 부모 연락처를 활용해 알리겠다고 협박

④ <공적지원 사칭>

자영업자 A씨(50세)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 "코로나19 자영업자 특별지원대출은 서민금융원에서"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공공기관의 공적지원으로 착각하고 연락

⇒ 존재하지도 않는 공공기관으로 사칭한 불법사금융업자가 제대로 된 계약서도 없어 연 수백%의 고금리로 일수대출

1. 공공기관 사칭 등 온라인 불법광고

- **(서민 금융기관 사칭)** 불법 대출업자들은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,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명칭 및 로고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등 정부의 서민지원대출을 사칭
 - 태극기 등을 게시하거나 정부기관의 로고를 교묘하게 변경하여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
 - “대출조건을 대폭 완화”하게 되어 “대출자를 추가 모집중”에 있으며, 대출신청은 “온라인으로 간편신청”할 수 있다고 불법 광고
- **(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상품 가장)** 한편, 근로자통합지원센터 등 정부기관(근로복지기금+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) 명칭을 혼합하여,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으로 가장한 불법대부광고도 성행
 - “더 알아보기” 버튼을 누르면 “휴대폰으로 누리는 간편한 정부지원 대출” 등의 가짜 기사로 연결하여 소비자의 신뢰감을 조성
 - “직장인 대상 상품”, “연체자, 신용불량자, 무직자는 신청 불가”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경계심을 해소하는 방법도 사용

2.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사칭한 광고

- **(코로나19 대출상품으로 가장한 문자)** 불법 대출업체들은 “KB금융그룹”, “KB국민지원센터” 등 마치 KB국민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전송한 것처럼 코로나19 대출 광고를 발송
 - “함께 이겨내요! 코로나19”, “코로나19 통합대환대출”, “최대 2억3천만원 고정금리 2.8%” 등 마치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코로나19 지원 대출인 것처럼 현혹
 - 이러한 문자메시지에 회신한 소비자에게 관련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 불법대출을 유도
- **(코로나19 대출을 가장한 전단지)** “코로나” 문구를 이용, 불특정 다수에 전단지 광고도 유포해 “코로나19 대출”인 것처럼 현혹

붙임 3

불법사금융 시장 현황

1.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결과('18년 기준)

* '19년말(3년차) 현황은 '20.6월말 현재 조사 진행중 (하반기 완료)
→ 금감원이 대국민 설문조사(샘플조사)하여 시장규모를 통계적으로 추정

□ (시장규모) 불법사금융 시장규모는 7.1조원(41만명) 수준으로 전년대비 이용금액은 다소 늘었으나, 이용자수는 감소*

* 이용금액(조원): ('17) 6.8 → ('18) 7.1, 이용자수(만명): ('17) 51.8 → ('18) 41

□ (취약계층 이용증가) 저소득자, 가정주부, 무직, 노령층 등 상환 능력이 취약한 계층의 이용 비중이 높고*, 전년대비 증가**

* 불법사금융 피해자 - 등록대부업 이용자 간 비교

비중(%)	월소득100만원미만	가정주부	무직	60대 이상	'상환곤란' 응답
불법사금융	10.1	22.9	6.3	41.1	54.1
등록대부업	2.0	8.1	2.6	12.9	19.0

** 취약계층 이용비중(% , '17→'18) : (노령층) 26.8 → 41.1, (주부) 12.7 → 22.9

□ (불법추심 빈번) 불법채권추심도 등록대부업보다 빈번히 발생하고, 빚을 내거나 제3자를 통한 채무변제를 강요하는 등 악질적인 경향

비중(%)	불법채권추심	빚을 내어 변제 강요	제3자에게 변제 강요
불법사금융	8.9	53.8	21.8
등록대부업	4.6	16.8	6.5

2. '20년중 동향

□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월 이후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('19년 대비 '20.4~5월 5~60% ↑)

【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피해 신고·제보 결과(일평균) 】

	구분	'19년중	'20.1월	'20.2월	'20.3월	'20.4월	'20.5월
피해신고	최고금리 위반	2.3	1.6	2.6	5.0	5.9	4.7
	불법추심	1.6	2.4	2.9	2.9	3.1	2.0
	미등록대부	10	16.2	12.4	12.0	16.9	15.4
	불법대부광고	6	4.6	4.7	8.2	8.5	8.0
	불법중개수수료	0.4	0.5	1.2	0.5	1.0	0.6
	소계	20	25.1	23.7	28.6	28.6	30.6

붙임 4

불법이자 수취 관련 QA

1. 불법사금융 수취이자를 6%로 제한하는 것의 의미는?

- 현재 무등록대부업자는 영업 자체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, 합법적 금융업자와 같은 수준의 최고금리(24%)를 유효하게 수취할 수 있는 상황 (대부업법 §8·§11 등)
- 무등록대부업자에 대해 수취이자를 6%로 제한하면,
 - 6%를 초과한 이자 지급분은 원금변제에 충당하고, 원금변제 후 남은 금액은 차주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반환 청구 가능

2. 24%를 초과한 초고금리 대출시 권리구제 방법은?

- 현행 대부업법*에 따라 24%를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은 무효로서 원금변제에 충당되고, 원금변제 후 남은 금액은 차주가 소송을 통해 반환청구 가능 (대부업법 §8)

* 반환청구권은 '02년 대부업법 제정시 도입, 원금변제충당은 '09년 개정시 도입

※ 금번 대책을 통해 “불법사금융 수취이자 제한(6%)”시, 무등록 대부업자의 대출은 6%를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이 무효

- 다만, 취약계층의 경우 직접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금년부터 관련 소송을 대리한 무료변호사 지원* 중(법률구조공단)

* 「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」(20.2월~)